

1963年鑛工業센서스

# 調查指示書

통계청 도서실



B0005645

經濟企劃院 · 韓國產業銀行

3/16.111  
73947

## — < 目 次 > —

凡例：目次 및 本文의 題目中 題目末尾에 記載된 數字  
는 調査票에 記載된 調査項目의 番號임

<b>第1節 調査員의 任務</b> .....	1
1. 調査區.....	1
2. 調査員證.....	2
3. 調査用品類의 點檢.....	3
4. 實查要領.....	3
(1) 調査對象事業體의 索出方法.....	3
(2) 面接要領.....	5
(3) 調査票用紙의 交付.....	6
(4) 事業主不在時 또는 臨時休業時.....	9
(5) 調査를 拒絕하는 경우.....	9
(6) 調査票의 回收 및 提出.....	10
(7) 不完全調査票의 再實查.....	11
(8) 實查日報.....	11
(9) 其他留意事項.....	12
<b>第2節 指導員의 任務</b> .....	14
1. 指導員의 地位.....	14
2. 調査用品類.....	14

B1645

3. 實查指導	14
(1) 調查區 境界線의 確認	14
(2) 調查員 實查計劃書에 對한 承認	15
(3) 事業體索出의 督勵	15
(4) 調查不應事業體의 訪問	16
4. 調查票의 回收 및 提出	16
5. 連絡 및 報告	17
(1) 連絡場所의 指定 및 確認	17
(2) 連絡時期	17
(3) 報告	18
<b>第3節 調查要綱</b>	19
1. 調查目的	19
2. 調查基準日字 및 調查基準期間	19
3. 調查期間	20
4. 調查機構	20
5. 調查對象	21
(1) 調查對象事業體	21
(2) 調查對象에서 除外되는 事業體	22
(3) 事業體의 定義	23
(4) 鑛業의 定義	25
(5) 製造業의 定義	26

6. 調査項目の定義と調査票の記入方法	26
(1) 一般留意事項	26
(2) 事業體の特徵(Ⅰ)	28
i) 事業體の名稱 및 代表者名(1)	28
ii) 事業體所在地(2)	29
iii) 主要生産品名 및 生産工程(3)	29
iv) 産業分類番號	31
v) 本社(本店)名(4)	32
vi) 本社(本店)所在地(5)	32
vii) 組織形態(6)	32
(3) 雇傭 및 給與額(Ⅱ)	33
i) 年末現在 従業員數(7)	33
ii) 被雇傭者(7-(1))	34
iii) 生産従業員(7-(1)-①)	35
iv) 事務 및 其他従業員(7-(1)-②)	36
v) 事業主 및 無給家族従業員(7-(2))	36
vi) 従業員數の合計(7-(3))	37
vii) 事業體規模符號	37
viii) 月別 被雇傭者數(8)	38
ix) 年間賃金 및 俸給支給額(9)	39
x) 現金給與額(9)	39

xi)	現物給與額(9).....	40
xii)	給與額の合計(9-(3)).....	40
(4)	年間生産費(人件費  및  間接費  除外)(Ⅲ).....	41
i)	原材料費(10).....	41
ii)	燃料費(11).....	43
iii)	購入電力費(12).....	43
iv)	購入用水費(13).....	44
v)	委託生産費(14).....	44
vi)	修理  및  維持費(15).....	44
(5)	製品出荷額  및  收入額(Ⅳ).....	45
i)	製品出荷額(17).....	45
ii)	廢品等出荷額(18).....	47
iii)	受託製造收入額  및  受託修理料收入額 (19, 20).....	47
(6)	内國消費稅額(V-22).....	48
(7)	在庫額(Ⅵ).....	48
i)	年初年末  製品在庫額(23).....	48
ii)	年初年末  原材料  및  燃料在庫額(24).....	49
(8)	有形固定資産(Ⅶ).....	49
i)	年間有形固定資産의  取得額  및 増改築額(26).....	49

ii) 土 地(26—(1))	50
iii) 建物 및 構築物(26—(2), 26—(3))	50
iv) 機械 및 器具(26—(4))	51
v) 車輛, 船舶 및 運搬機器(26—(5))	51
vi) 年間有形固定資産의 處分額 및 損害額(26)	51
(9) 動力施設(VIII)	52
i) 年末現在 動力施設의 能力(29)	52
ii) 電動機(29—(1))	52
iii) 原動機(船舶用, 車輛用 및 自家發電用 除外)(29—(2))	53
iv) 自家發電能力(29—(4))	53
(10) 管轄事業體(IX—30)	53
(11) 其 他	54
(12) 補 遺	54
i) (5)의i)製品出荷額	54
ii) (4)의i)原材料費	55
iii) 本社實査上の處理	55

## 第 1 節 調查員의 任務

### 1. 調 查 區

우리나라의 全地域을 約 700個의 區域으로 分割하고 이 分割된 單位區域을 調查區라고 말합니다.

이 調查區는 調查員 한 사람이 調查期間中에 한 調查區內에 所在하고 있는 全事業體를 容易하게 索出調查 할 수 있도록 交通 및 事業體數等を 勘案하여 設定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調查員이 한 調查區를 擔當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各自가 擔當하여야 할 調查區의 區域은 別途配付되는 調查員證에 記載되어 있습니다.

調查員 各自가 擔當하여야 할 區域은 여러분이 活動하여야 할 地理的 範圍가 되므로 區域의 境界線에 關하여 未審한 點이 있으면 所屬指導員으로부터 明確한 指示를 받을 뿐 아니라 自己調查區와 隣接된 調查區 調查員과도 相互間의 境界線을 明確히 알아 둠으로서 實査에 있어서 重複調查나 調查漏落을 未然에 防止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實査를 開始하기 前에 自己 擔當 調查區內의 地理的 條件을 充分히 把握하고 最短距離로 全地域을 빠짐 없이 踏査할 수 있도록 路順과 日程等を 包含하는 實査

計劃書를 미리 作成하여야 합니다.

實查日程을 計劃함에 있어서는 調査期間 開始日부터 늦어도 1週日 以內에 擔當全域에 對한 1回의 踏查完了를 目標로 하여야 합니다.

## 2. 調査員證

調査員證은 여러분이 事業體로부터 얻은 調査資料의 秘密을 保護하고 統計目的 以外에 使用하지 않겠다는 統計法의 規定하는 條項을 履行하기 爲하여 充分히 訓練되고 正當한 調査員임을 調査對象事業體에게 提示하는 唯一의 證明書입니다.

따라서 調査對象事業體의 事業主 또는 代理人 (以下 事業體의 實務者라함)과 面接할 때에는 반드시 調査員證을 提示하여야 하며 비록 以前부터 面識이 있는 相對便이라 할지라도 調査員證의 提示를 省略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調査員證을 提示할 때에는 相對便이 充分히 볼 수 있는 時間的 餘裕를 주는 것과 같은 細心한 注意가 必要합니다.

註: 1) 統計法第 8條 (統計調査員) ① 指定統計調査를 實施하기 爲하여 一線에서 調査하는 統計調査員을 指한다.

② 本 統計調査員은 本法에서 特히 規定한 것 以外에는 國家公務員法을 適用한다.



- 2) 統計法第10條(秘密의 保護) 統計調査의 結果 알려진 個人, 法人 其他의 團體의 秘密은 保護되어야 한다.
- 3) 統計法第11條 (統計目的以外의 使用禁止) 누구든지 指定統計의 作成을 爲하여 蒐集된 統計資料를 統計上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3. 調査用品類의 點檢

實查上에 必要한 用紙, 用品 및 其他 資料等은 別途配付될것이니 이러한 用品類을 받으면 다음에 依하여 點檢 하십시오.

- (1) 調査票用紙
- (2) 調査指示書 1 部
- (3) 産業分類 1 部
- (4) 産業別原材料 및 生産品分類 1 部
- (5) 表紙 및 實查日報用紙
- (6) 其他記錄用品(備忘帖, 볼펜, 書類袋, 郵票, 封套, 종이접게, 地圖等)

### 4. 實查要領

#### (1) 調査對象事業體의 索出方法

調査員은 擔當區域內를 미리 計劃된 路順을 쫓아서 都市 이면 뒷골목 小路까지 빠짐없이 實地踏查하여 調査要綱에서 說明하는 調査對象事業體를 索出하여 주십시오. 이런 경

우 調査漏落이 없도록 하기 爲하여 踏査한 곳과 事業體所在地를 낱낱이 記錄하고 (地圖上에 適宜 表示하는等)自己擔當 區域外에 所在하는 事業體를 包含하지 않도록 特別히 注意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索出된 그 場所에 事業體의 單位가 한個人가 或은 二個 以上인가를 判斷하여 주시되 그 判斷方法은 事業體의 定義에서 說明되어 있으니 仔細히 읽어 주십시오. 看板이 없어도 調査對象인 事業體가 있을 경우가 있으며 官公署 百貨店「아파트먼트」內等과 같이 外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調査對象事業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事業體를 發見하면 그近處에 다른 事業體가 있는지 없는지를 索出한 事業體에 問議하는 것도 한 方法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情報 만을 믿고 全路順의 踏査를 省略하면 特히 都會地에서는 調査漏落이 많이 생길 憂慮가 있으므로 이點 特히 留意하여 주십시오.

萬若 他調査員이 自己擔當區域內의 事業體를 調査한 것이 判明되었을 때에는 所屬指導區責任者 및 指導員을 通하여 實査한 調査員으로 부터 當該調査票를 받아 重複調査가 되지 않도록 處理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事實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事業體側에 不快

感을 주지 않도록操心하면서 그 調査員의 姓名, 實查日字, 調査票回收의 與否等を 問議하고 그 經緯를 實查日報의 特記事項欄에 詳細히 記載하여 即日 所屬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報告하여야 합니다.

## (2) 面 接 要 領

調査員은 調査對象事業體를 索出하면 事業主 또는 代理人과의 面接을 要請하되 面接할 때에는 于先 鄭重한 態度로서 반드시 自己紹介를 먼저 하여 주십시오.

事業體의 實務者가 他人과 面接中인 때에는 그 面談이 끝날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禮義일 것 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調査員證을 相對便에 提示하여야 하며 비록 以前부터 面識이 있는 相對便이라 할지라도 調査員證의 提示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調査員證을 提示함에 있어서는 相對便이 充分히 볼 수 있는 時間的 餘裕를 주어야 하며 形式的으로 보이는 체단하여 相對便의 疑心을 사지 않도록 하십시오.

自己紹介의 例를 들면 『이미 新聞이나 포스터-를 보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經濟企劃院과 韓國産業銀行이 共同으로 UN과 國內 여러 機關의 協力을 얻어 實施하고 있는 1963年 鑛工業센서스(事業體 實態調査)의

○○地區 擔當 調査員 ○○○입니다. 바쁘신데 罪悚합니다만 暫時동안 時間을 내어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하는 式으로 相對便의 諒解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調査票用紙의 交付

事業體의 實務者에 對한 自己紹介와 諒解를 求하는 人事가 끝나면 調査票用紙를 提示하면서 이번 鑛工業센서스를 實施하는 目的과 趣旨를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簡單하게 說明하십시오.

이번 調査는 UN產業센서스年을 맞이하여 UN의 勸告下에 全世界的으로 實施한다는 點과 이 調査는 政府의 指定統計로서 統計法의 定하는 바에 따라 對象事業體는 申告義務가 있다는 點과 또한 事業體에서 提供한 資料에 對하여는 統計法에 依하여 秘密이 保護되어 있기 때문에 統計目的以外로는 課稅나 搜查用으로 絶對 使用하지 못한다는 點을 強調한 다음 이 調査의 目的은 우리나라의 國民生活水準을 높이고 產業의 基盤이되는 鑛工業發展을 計劃함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있으며 國家的인 意義가 있다는 것을 說明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說明이 끝나면 封套, 調査票用紙 및 調査要領書를 相對便에 手交하면서 封套는 調査票回收時에 써달

라고 付託하십시오. (이는 調査票 記載內容의 秘密을 지키기 위함임) 그리고 事業體의 特徵, 雇傭 또는 動力施設의 馬力數等과 같이 比較的 容易하게 卽席에서의 記入이 可能한 것은 調査員自身이 直接記入토록 하여 可及的 相對便의 手肯을 덜 수 있는 點에 留意하시고 그 外에 卽席에서의 記入이 困難한 다른 項目은 相對便에 依賴해도 無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境遇에는 相對便에 對한 具體的인 記入要領의 說明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或 경우에 따라서는 調査員이 直接 問答形式으로 調査記入하여야 할 때도 있을 것이므로 한 事業體에 對한 調査票回收가 卽席에서 可能할 경우도 있고 卽席調査가 不可能하여 調査票回收를 爲한 再訪問의 時日約束이 必要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調査票를 交付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調査票의 調査區番號欄에 自己調査區番號를, 事業體番號欄에 調査票의 配付順序대로 事業體의 一連番號를 記入하고 備忘帖에는 事業體番號, 事業體名, 所在地 및 調査票回收與否等を 記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事業體의 實務者와 面接을 할때 또는 調査票를 作成할 때에 調査員自身이 自進해서 便利한 座席準備를 要求하는 式의 態度를 取해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는 相對便에게 不愉快한 感을 주지않기 위하여 紳채로 또는 不便한 姿勢로 調査하여야 할 覺悟도 必要할 것 입니다.

특히 調査項目中 秘密을 지켜야 할 項目에 關한 質問途中 다른 來客이 왔을 때는 그 調査를 一旦 中止하고 기다리든지 또는 其他方法으로 談話內容이 第三者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注意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如何한 경우라도 相對便과 論爭해서는 絶對로 안됩니다. 相對便이 或 調査員의 質問內容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對答을 할 때에도 그것을 直接 否定치 말고 「네」 또는 「그렇습니다」하고 可能한 範圍內에서 肯定을 한 다음 다시 다른 方法으로 理解할 수 있는 質問을 하도록 해 보십시오.

이 調査와 關係없는 政治問題나 一般社會的인 話題를 꺼내지 말 것이며 或 相對便이 그런 話題를 끄집어 내더라도 適當한 方法으로 話題를 돌리든지 하십시오. 調査事務는 人事가 끝나는 데로 卽時 시작하여야 하고 時間을 虛費해서는 안되며 用務가 끝나면 곧 다음 事業體로 옮겨 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事業體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相對便에게 「이렇게 잘 協助해 주셔서 感謝합니다」라는 人事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註：1) 統計法第3條 (指定統計調査) ① 指定統計를 作成하기 爲한 調査 (以下指定統計調査라한다)는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 ② 指定統計調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經濟企劃院令으로 한다.
- 2) 統計法第 5條 (申告義務) ①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 其他 機關의 長은 指定統計調査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個人, 法人, 其他의 團體에 對하여 統計資料의 申告를 命할 수 있다.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의 命令을 받은者가 未成年者나 禁治產者인 境遇 또는 法人 其他의 團體인 境遇에는 그 法定代理人(中略) 申告하여야 한다.

#### (4) 事業主不在時 또는 臨時休業時

事業體를 訪問하였으나 事業主 또는 그의 代理人이 不在中 이거나 또는 公休日關係等으로 臨時 休業中인 때에는 備忘帖에 事業體番號(一連番號), 事業體名, 所在地 및 實査를 못한 事由等을 記錄함으로서 後日의 再訪問에 對備 하여야 합니다.

#### (5) 調査를 拒絶하는 경우

相對便이 非協調的이거나 拒絶하는 態度를 보일 때에도 調査員은 沈着한 態度로 相對便의 理解를 求하도록 努力 하여야 합니다.

調査項目이 많아서 귀찮아 할 때에는 外國의 例에 比하여 顯著히 簡單하다는 것과 調査目的의 重要性等을 強調 하십시오.

이 調査에서 얻어진 資料가 여러가지 政策樹立에 利用 됨으로서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을 가져오게 할뿐 아니라 間

接的으로 同事業體의 繁盛을 바랄 수 있다는 點을 說明 하십시오.)

또한 이 센서스의 結果로 發行될 事業體名簿에는 各事業體에 對한 事業體名, 代表者名, 所在地, 電話番號, 主要生産品名, 從業員數 등이 記載됨에 따라 各事業體의 無料廣告가 되는 利點이 있다는 것을 說明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이 說得시켜도 調査를 拒絶할 경우에는 相對便에 不快한 感을 주거나 다시는 訪問치 않겠다.는 意味의 最後的인 말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態度를 보여서는 絶對로 안되며 後日에 2回 3回 再訪問한다면 그 誠意에 感動하여 大體로 協力을 求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始終 拒絶할 때에는 所屬指導區責任者와 指導員에게 그 經緯와 事由를 報告하고 指示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強硬히 拒絶하는 事業體가 있다 하더라도 有能한 調査員 여러분은 熱과 努力만 있다면 能히 說得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 (6) 調査票의 回收 및 提出

調査員이 直接 踏査하면서 配付한 調査票는 늦어도 調査期間 最終日까지 그 全部를 回收하되 個個 調査票에 誤記 漏落 등이 없는 가를 慎重히 檢討한 後 不完全한 點을 發



見하면 即時 再調査하여야 합니다. 完全한 것으로 確認된 調査票는 事業體(一連番號) 順序대로 모아 表紙와 같이 綴하고 그 表紙에는 調査區番號, 調査票枚數, 調査員姓名等を 記入하여야 합니다. 이 調査票綴은 調査期間 完了翌日부터 2日以內에 指導員을 經由하여 所屬指導區責任者에게 提出하여야 합니다. 提出方法은 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直接 手渡하여야 하며 特別한 指示가 없는限 人便이나 郵便으로 送付하여서는 안됩니다.

#### (7) 不完全調査票의 再實查

調査員이 提出한 調査票에 對하여는 指導區責任者 또는 本部에서 審査한 다음 不完全한 點이 發見되면 再調査를 指示할 것입니다. 이런 調査票는 最短時日內에 再調査하여 指定한 日字까지 指定한 場所로 送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各調査員은 이와 같은 2次 3次の 手苦를 덜기 위하여 처음부터 錯誤가 없도록 格別 留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實查日報

事業體의 索出, 調査票用紙의 交付 및 調査票의 回收等 調査員의 活動狀況을 實查日報(所定樣式)에 依하여 每日 所

屬指導區責任者와 指導員에게 報告(郵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索出한 事業體와 同一한 企業體에 屬하고 別個의 事業體로 看做되는 本社, 支社, 出張所 및 分工場等이 他 調査區域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名稱, 所在地, 代表者名, 主要生產品名, 從業員數 및 稼動與否等を 調査하여 實查日報에 記載하여 주십시오.

### (9) 其他留意事項

- i) 調査中途에 未審한 點이 생기면 調査指示書 또는 其他配付資料를 보고 解決하거나 所屬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問議해서 解決하도록, 하고 調査員任意로 處理해서는 안됩니다.
- ii) 如何한 경우라도 他人에게 調査를 依賴하거나 調査票의 記入을 全的으로 事業體側에만 依賴하여서는 안됩니다.
- iii) 비록 事業體에서 虛偽資料를 提供할지라도 獨斷的인 判斷으로 記入하지 말고 恒常 前後 記載內容을 相互 對照하거나 또는 事業體에게 再問議하여 正確한 調査가 되도록 努力하여야 합니다.
- iv) 調査票記入이 一旦 完了되면 그대로 調査票를 回收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再檢討하여 疑問이 나는 點이 있거나 相互矛盾된 點이 있으면 再調査하여야 합니다.

- v) 調査票의 記載事項을 他用紙에 轉寫하거나 外部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記入된 調査票는 調査員이 調査가 끝날 때 까지 保管하여야 하므로 保管에 格別한 操心이 必要합니다.
- vi) 調査票用紙 節約에 留意하되 萬一 調査途中 用紙 不足이 豫見되면 곧 所屬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遲滯없이 連絡하여 주십시오.
- vii) 事業體의 秘密漏泄을 防止하는 見地에서 汚損된 調査票는 반드시 回收하여 所屬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返納하여야 합니다.
- viii) 不誠實한 調査로 調査票의 該當欄을 空白으로 두거나 調査票에 虛僞로 操作한 數字를 記入해서는 안되며 索出된 事業體를 故意的으로 調査漏落시켜서는 안됩니다.

## 第 2 節 指導員의 任務

### 1. 指導員의 地位

指導員은 指導區責任者의 指示를 받아 現地에서 調査員의 活動을 直接 指導 또는 支援하는 한편 日常 調査員의 活動狀況을 把握하고 이를 指導區責任者에 報告함으로써 指導區責任者와 調査員間의 有機的인 連絡關係를 維持 強化하여야 할 地位에 있는 것 입니다.

指導員 여러분이 擔當하여야 할 調査區番號는 別途 配付해 드릴 調査要員證에 記載되어 있습니다.

### 2. 調査用品類

指導員 自身이 必要한 各種用紙, 用品 및 資料等の 配付를 받으면 第1節 3에 準하여 이를 點檢하여 주십시오.

調査員에 追加供給하여야 할 各種用紙의 一括配付를 받아 保管하였다가 調査員으로 부터 追加請求가 있는 대로 配付하여 주십시오.

### 3. 實 查 指 導

#### (1) 調査區境界線의 確認

指導區責任者가 特히 指摘하거나 또는 調査員으로 부터 未

審하다고 申告되는 境界線에 對하여는 關聯 調査員과 同  
途로 現地를 踏査하고 具體的이고 明白한 境界線을 關聯  
調査員에게 確認시켜야 합니다.

### (2) 調査員實査計劃書에 對한 承認

指導員은 擔當調査區域內的 地理的條件을 調査把握하여야  
하며 調査期間 開始前日까지 所屬調査員으로 부터 實査計  
劃書(日程과 路順)의 提出을 받아 그의 合理性與否를 調  
査員과 討議한 다음 이를 承認하고 同計劃書의 各1部式을  
所屬指導區責任者에게 提出하여야 합니다.

### (3) 事業體索出의 督勵

指導員에게는 本部에서 既存資料에 依하여 作成한 事業  
體카아드를 配付할것이니 이 카아드를 索出督勵에 活用하  
여야 하며 調査完了後에는 이를 指導區責任者에게 返還하  
여야 합니다.

이 카아드에는 索出하여야 할 全事業體를 記錄한 것은 아  
니며 이와 같은 카아드에 記載된 內容 卽 不充分한 情  
報를 事前에 調査員에게 提供함으로써 調査漏落을 가져올  
憂慮가 있기 때문에 原則上 事業體카아드를 調査員에 보여  
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一部區域에 對한 調査員의 索出報  
告(實査日報)를 받았을 때에는 同報告內容을 事業體카아드

와 對照하고 漏落事業體를 發見하면 그 內容을 調查員에게 通知하여 追加索出토록 指示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地域이 廣大하거나 또는 都市以外인 農村地區 調査區에 있어서 調查員이 事業體 分布에 對한 情報를 事前에 把握함으로써 索出能率을 높일 수 있고 索出漏落의 憂慮가 없다고 指導區責任者가 認定할 때에는 카아드의 情報를 調查員에게 事前提供할 수 있습니다.

#### (4) 調査不應事業體의 訪問

指導員이 調査不應事業體를 訪問코저할 때에는 指導區責任者로부터 協調依頼文(經濟企劃院長官 産銀總裁 共同名義)의 交付를 받아 持參하고 可及 調查員과 同途 訪問하여야 하며 同事業體側과의 面談은 于先 不應의 意思를 表明하였던 者부터 시작하고 萬一 그사람이 如前히 不應할 때에는 順次的으로 높은 地位에 있는 者와 面談하고 最終的으로 同事業體 代表者의 意思를 確認하여야 합니다.

#### 4. 調査票의 回收 및 提出

調査員으로 부터 檢討完了된 調査票의 提出을 받으면 이를 表紙, 實查日報, 事業體카아드等の 內容과 對照하고 調査票枚數의 符合與否, 漏落事業體의 有無, 重複調査의 有無, 內容錯誤의 有無等を 檢討確認한 다음 不備點의 補充

이나 追加調査를 指示하여야 합니다.

回收된 各調査員의 調査票綴, 未使用用紙, 汚損調査票 및 事業體카드 등은 調査期間 完了後 2日以內에 指導區責任者에게 이를 直接 手渡하여야 합니다.

## 5. 連絡 및 報告

### (1) 連絡場所의 指定 및 確認

指導員은 自己와 連絡하는데 있어서 가장 便利한 場所로 自己住所나 住所附近에 이를 指定하고 所屬指導區責任者와 調査員에 미리 周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所屬調査員과 指導區責任者의 連絡場所도 確認記錄함으로서 後日의 連絡에 對備해 주십시오.

### (2) 連絡 時期

指導員은 調査期間中 調査進行狀況을 連絡하고 새로운 對策을 檢討하기 爲해서 所屬調査員 또는 指導區責任者와 直接 面接하여야 하며 그 回數는 交通事情과 區域의 廣狹 등을 勘案함과 아울러 다음의 範圍內에서 指導區責任者와 相議해서 定하여야 한다.

- i) 調査員과는 2~3日間에 1回以上
- ii) 指導區責任者와는 5~10回 (責任者의 巡視를包含)

### (3) 報 告

所屬指導區責任者와 本部에 對하여 每2日에 實查指導隔日報(所定樣式)를 定期的으로 提出하여야 하며 必要에 따라서는 隨時로 文書로 報告하여야 합니다.

調査員과 面接할때에는 進行狀況을 口頭報告 받는 外에 調査員이 備置하고 있는 實查日報(備本)에 依하여 進行狀況을 檢討하고 새로운 指示나 意見を 傳達하여야 합니다.



### 第3節 調 查 要 綱

#### 1. 調 查 目 的

이 센서스의 目的은 우리나라 鑛工業部門의 實態를 計數的으로 正確히 把握함으로써 鑛工業의 發展을 비롯한 諸般 經濟政策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 調査事業은 어떤 機關이나 政府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舉國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重要한 意義를 지니고 있습니다.

#### 2. 調 查 基 準 日 字 및 調 查 基 準 期 間

調 查 基 準 日 字 是 1963年12月31日 로 하며 調 查 基 準 期 間 是 1963年1月1日 부터 1963年12月31日 까지의 1個年間으로 합니다.

調 查 基 準 日 字 是 어느 調 查 項 目 的 狀 態 를 一 定 한 時 點 에 서 調 查 考 據 할 經 우 에 必 要 한 基 準 日 字 를 말 하 며 例 컨 데 이 번 센 서 스 에 서 從 業 員 數 , 動 力 施 設 等 은 一 定 한 時 點 即 調 查 基 準 日 字 인 1963年12月31日 現 在 的 狀 態 를 調 查 하 는 것 이 니 다 .

그리고 調 查 基 準 期 間 是 一 定期間의 狀 態 를 調 查 하 여 야

할 必要가 있는 調査項目의 調査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 期間을 말하며 例컨대 이번 센서스에서 生産費, 出荷額, 有形固定資産取得額等은 調査基準期間인 1963年間の 總累計額을 調査하는 것 입니다.

### 3. 調査期間

調査期間은 1964年3月23일부터 1964年4月11日까지의 20日間입니다.

調査期間은 實地로 調査하는 期間으로서 對象事業體를 實地로 訪問하고 事業體에게 申告義務의 履行을 要求할 수 있는 期間입니다.

### 4. 調査機構

韓國産業銀行 本店內에 經濟企劃院과 産銀의 共同機構인 鑛工業센서스本部를 設置하고 全國에 33個의 指導區와 691個의 調査區를 設定하며 指導區에는 指導區責任者 1名과 若干名의 指導員을 配置하고 調査區에는 1名의 調査員을 配置합니다.

指導區責任者는 本部의 指示를 받아 管轄指導區內의 指導員과 調査員을 指揮監督케 하고 指導員은 指導區責任者

의 指示를 받아 調査員의 活動을 指導 또는 支援케함과 아울러 指導區責任者와 調査員間의 連絡業務를 擔當케하고 調査員은 擔當調査區域內를 實地踏查하여 調査業務를 擔當케 합니다.

## 5. 調 查 對 象

### (1) 調 查 對 象 事 業 體

이 調査는 1963年12月末日(調査基準日)現在 國內에 實在하고 別冊 産業分類에서 말하는 鑛業 및 製造業에 屬하는 事業體로서

- i) 1963年12月末日現在 從業員數 5名以上이거나
- ii) 1963年12月中 操業日數의 平均從業員數 5名以上이거나
- iii) 1963年1月1日부터 1963年12月末日까지인 調査基準期間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 5名以上の 從業員을 가지고 있으면 調査對象事業體로 합니다.

그러나 休業中이거나 季節的인 事業體는 1963年間の 操業月數가 3個月以上이고 그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가 5名以上이면 1963年12月末日現在 操業中 이거나 休業中 이거나를 不問하고 모두 調査對象이 됩니다.

그리고 製鹽事業體는 1963年間の 操業月數가 3個月未滿 이더라도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가 5人以上이면 調査對象으로 합니다.

(2) 調査對象에서 除外되는 事業體

- i) 1963年12月末日現在 從業員數가 4名以下 또는 同年 12月中 操業日數의 平均從業員數가 4名以下이거나 或은 1963年間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가 4名以下인 事業體
- ii) 休業中 또는 季節的인 事業體로서 1963年12月末日 現在 休業中일 때에는 1963年間の 操業月數가 3個月未滿이거나 그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가 4名以下인 事業體
- iii) 1963年12月末日現在에 設立中에 있거나 또는 新設工事中인 事業體
- iv) 政府의 會計에 依하여 運營되는 事業體로서 鐵道廳의 車輛工作廠 및 專賣廳의 煙草工場을 除外한 事業體
- v) 國軍, 國聯軍 및 外國의 外交機關이 直營하는 事業體
- vi) 公共職業補導所의 作業所

vii) 公共團體 및 學校에 屬해있는 試驗所, 研究所等은 原則的으로 調查對象에서 除外됩니다.

### (3) 事業體의 定義

事業體라 함은 個個의 工場, 作業場, 鑛山事務所(店舖)等과 같이 그곳에서 製品, 鑛產物 또는 [써어비스] (修理 및 加工)를 生産하는 獨立한 [物理的 場所]로서 하나의 單一 産業으로 分類할 수 있는 産業的 單位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會社 또는 한工場에 所屬된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떨어져있는 支社 或은 分工場 또는 出張所等을 各 別個의 事業體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個의 事業體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i) 同一構內에 있더라도 別個의 事業體로 보아야 하는 경우

單一經營體에 屬하는 몇個의 事業이 同一한 構內에 있는 경우 (例, 한 株式會社가 同一한 構內에 고무 新工場, 타이어工場, 벨트工場 等を 가지고 있을때)에 出勤簿와 賃金支拂臺帳 및 財産目錄이 各工場別로 區分되어 있으면 各各 別個의 事業體로 봅니다. 萬一 財産目錄이 없을 경우에 原料購入額, 製品生産額, 製品販

賣額等を工場別로 區分 調査할 수 만 있다면 財産 目錄이 있는 것으로 看做합니다.

ii)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事業體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서 別個의 構內에 있더라도 前記(i)에서 말한 記錄이 統合되어 있을 때에는 그 記錄을 主管하고 있는 事業體에 包含시켜 하나의 事業體로 봅니다.

이때에 그 記錄을 主管하고 있는 事業體가 他調査 區內에 所在하고 있을 경우에는 自己調査區內에서 可能な 때까지 調査하여 이를 調査票에 記入하고 同調査 票를 實査日報에 添付하여 所屬指導區責任者에게 即日 送付하여 주십시오.

指導區責任者를 經由하여 이 未完成調査票를 받은 調査員은 殘餘調査를 履行하여 주십시오.

iii) 本社, 支社, 支店, 販賣部等の 處理

作業現場과 떨어져 있는 場所에 있는 本社, 支社, 支店, 販賣部等에 對한 事業體處理는 前記(i)에서 말하는 記錄을 各各 獨立하여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別個事業體로 各各 處理하여야 하며 萬一 (i)에서 말하는 記錄이 統合되어 있을 때에는 前記 (ii)에서 말한 바와 같은 方法에 準하여 處理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事業體가 주로 他企業體 生産品의 賣買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 事業體를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別個事業體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주로 自己企業體 生産品의 賣買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事業體를 調査對象으로 합니다.

#### (4) 鑛業의 定義

天然的으로 固體, 液體 또는 氣體로 되어있는 鑛物을 探掘, 採取하는 事業을 말합니다. 鑛物의 探掘은 地下坑道에서 하거나 地表坑場에서 하거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鑛石中の 混雜物을 除去하기 爲한 附隨的作業 卽 鑛石의 破碎, 洗滌, 乾燥, 選鑛等도 鑛山經營者가 하거나 鑛山을 直營하지 않은 事業體가 請負에 依하여 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모두 鑛業에 包含합니다.

그리고 鑛物試掘業, 鑛物性燃料와 金屬鑛物의 探掘, 採取業以外에 鹽 및 土砂石等의 非金屬鑛物 및 稀有金屬鑛業等도 이에 包含합니다.

鑛業의 보다더 細密한 定義와 그 分類方法은 別冊 産業分類에 依하여 決定해 주십시오.

## (5) 製造業의 定義

製造業은 無機的物質 또는 有機的物質(原材料)에 物理的  
作用 또는 化學的作用을 加함으로서 그것(原材料)을 새로  
운 生産品으로 轉換시키는 産業活動을 말합니다.

그 作業은 動力으로 하거나 人力으로 하거나 또는 工  
場에서 하거나 家內에서 하거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i) 製造된 部分品을 組成(組立)하는 活動은 建物, 道  
路, 港灣等の 建設 또는 施設工事を 主目的으로 하는  
建設業이 아닌限 이를 製造業으로 봅니다.

ii) 修理業은 一般的으로 製造業으로 보고 修理되는 物  
品을 製造하는 業種에 包含시켜서 分類합니다.

iii) 發電室, 研究室, 修理工場, 車庫, 倉庫等과 같이 製造  
業을 營爲하는 事業體에 附隨되어 補助的인 活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事業의 主된 業種에 包含시  
켜 分類합니다.

製造業의 보다 細密한 定義와 그 分類方法은 別冊  
産業分類에 依하여 決定해 주십시오.

## 6. 調査項目의 定義와 調査票의 記入方法

### (1) 一般留意事項



調査票는 實査完了後 審査, 分類, 集計等 여러作業에 繼續 使用될 것이며 永久保存할 것이므로 調査票의 記入에 있어서는 格別한 注意가 必要하며 다음 事項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 i) 調査票에는 반드시 靑色 또는 黑色잉크를 使用하여 깨끗하게 記入하여 주십시오.
- ii) 數字以外는 可及 漢字의 正字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 iii) 數字는 반드시 1, 2, 3, ……과 같은 「아라비아」數字를 使用하여 주십시오.  
아라비아 數字를 흘려서 쓰면 分辨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 特히 4와 6, 0과 6, 3과 5, 7과 9를 混同되지 않도록 차근 차근 하게 記入하여 주십시오.
- iv) 各 金額欄은 金額單位를 正確하게 區分하기 위하여 千원, 萬원, 十萬원, 千萬원, 億원……………과 같이 單位金額을 記入할 數字 하나 하나의 자리를 調査票에 미리 定해 놓았으니 金額의 數字를 正確한 자리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 v) 千원未滿의 金額은 4捨5入하시고 4捨5入 해도 千원에 未達되는 金額은 「0」으로 表示하여 주십시오.
- vi) 訂正코저 할 때는 誤記된 곳에 두줄의 赤線을 긋

고 그 바로 위에 正當한 것을 깨끗이 記入하여 주십시오.

vii) 調査票의 各欄에 「☆」標가 있는 곳은 記入하지 마시고 ※標가 있는 곳은 調査員만이 記入할 수 있는 곳이니 事業體側에서는 記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2) 事業體의 特徵 (I)

### i) 事業體의 名稱 및 代表者名 (1)

事業體의 名稱이라 함은 그 事業體가 營業上 現實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商號를 말하며 그 事業體의 特徵을 具體적으로 밝힐 수 있는 名稱을 調査票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韓國○○工業株式會社 ○○工場 또는 ○○企業社 ○○工場」等으로 詳細히 記入하여야 합니다.

代表者라 함은 그 事業體를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事業主 또는 法人의 代表者를 말합니다. 代表者인 自然人的 姓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ii) 事業體 所在地 (2)

事業을 經營하고 있는 實地場所를 말하며 市, 道名 부터 番地數까지 具體的으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所在地欄에는 行政區域의 單位名稱이 미리 印刷되어 있으니 行政區域名을 該當한 곳에 挿入하는 同時에 各該當單位名稱을 [○]으로 둘러 싸 주십시오.

iii) 主要生産品名 및 生産工程 (3)

主要生産品名 및 그 生産工程은 그 事業體의 業種을 分類決定하는데 必要한 基準이 되는 것이며 또한 別冊 産業分類에서도 主要生産品名과 그 生産工程을 基準으로 하여 業種을 分類하고 있습니다. 한 事業體가 1種類의 製品만을 生産할 때에는 그의 品名과 工程을 記入하면 되며 2種類 또는 그 以上일 境遇에는 다음의 方法으로 主要生産品 하나 또는 둘을 選定하고 그 品名과 그 生産工程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1) 1963年間の 賣上高 또는 收入이 제일 많은 生産品 또는 서비스

(2) 萬一 (1)項의 方法으로 選定하기 困難한 경우에

는 從業員數 또는 設備의 程度(價格)가 제일 많은  
生産品 또는 서비스

(ㄷ) 生産品이 季節的으로 變動할 때에는 最近의 實績  
에 關係없이 1963年間の 賣上高 또는 收入이 제일  
많은 生産品 또는 서비스

(ㄹ) 한 事業體가 伐木과 製材를, 또는 粘土採掘과 벽  
돌製造를 一貫作業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最終生産  
品인 木材 또는 벽돌을 主要生産品으로 選定합니  
다.

그러나 大部分의 原木을 原木대로 販賣하고 極少量  
만을 製材하는 경우에는 그 主된 事業은 結局 原  
木의 伐木業(林業)이 되므로 調査對象에서 除外됩니  
다.

(鑛業의 경우)

例컨데 無煙炭의 採掘부터 選鑛까지 一貫作業을 하  
고 있을 때에는 主要生産品名을 「無煙炭」이라 먼저  
記入하고 (採掘→選鑛→無煙炭)과 같이 生産工程을 記  
入하여 주십시오.

(製造業의 경우)

例컨데 于先 한 事業體가 主로 「벽돌」製造를 하고

있을 경우 主要生産品名에는 「벽돌」이라고 먼저 記入하고 다음에 生産工程에는 (粘土→成形→燒成) 程度로 簡單히 要約해서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原棉을 原料로 使用하여 綿糸를 製造할 경우 먼저 主要生産品名에 「綿糸」라고 記入하고 生産工程에는 (原棉→精紡→綿糸)라고 記入하시면 됩니다. 또한가자 例를 들면 主要生産品名이 「外衣 및 外套」일 경우에는 (購入外套服地→裁斷→裁縫→男子用外套)와 같이 生産工程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한 事業體의 生産工程에 있어서 投入原料가 素材이나 中間製品이나를 가려 내고 또한 最終工程에서 나오는 製品이 中間製品이나 最終完製品이나를 가려내는데 이 項目을 調査하는 根本目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主要生産品名과 그 生産工程은 다음에서 나오는 産業分類의 正確性을 期하는데 있어서도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입니다.

#### iv) 産業分類番號

上記와 같은 要領에 依하여 主要生産品名과 그 生産工程이 確定되면 그 品名과 工程에 依하여 別冊 産業分類에서 그 事業體의 産業分類番號 (細分類—4자리數字)를 찾아

내서 調査票의 産業分類欄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v) 本社(本店)名 (4)

本社(本店)라 함은 1個 또는 1個以上の 事業體를 總轄하는 한 企業體의 中樞的이며 主된 唯一의 單位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欄에는 本社 또는 本店이 營業上 現實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商號를 具體的으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本社 또는 本店名이 別途로 없을 경우에는 「事業體名과 同一」이라 記入하여 주십시오.

vi) 本社(本店)所在地 (5)

本社(本店)가 있는 所在地를 말하며 市道名부터 番地數까지 具體的으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所在地의 記入要領은 事業體所在地의 記入方法에 準하여 處理하여 주십시오.

vii) 組織形態 (6)

이 項目에서는 그 事業體가 所屬되어 있는 經營主體(企業體)가 法人인가 個人인가를 먼저 究明하고 法人인 경우에는 株式會社인가 其他法人인가를 區分한 다음 調査票 事業體의 特徵 組織形態欄의 括弧內에 「○」表示를 하는 同

時 別欄의 組織形態에 다음의 符號를 記入하여 주십시오.

株式會社……1, 其他法人……2, 個人……3

法人이라 함은 商法, 民法, 또는 特殊法에 依하여 設立되고 法人登記를 完了하여 法人格을 갖고 있는 法人을 말하며 法人에는 商法에 依한 株式會社, 合名會社, 合資會社, 有限會社와 民法에 依한 財團法人, 社團法人과 特殊法에 依한 特殊法人(例컨데 國營企業體)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株式會社와 其他法人으로 區分하고 其他法人에는 株式會社 以外의 모든 法人을 包含하여 주십시오.

個人 卽 個人事業體라 함은 單一世帶 또는 單一所有의 事業體와 法人格이 없는 組合과 같은 任意團體 및 2人以上에 의하여 共同目的을 爲하여 構成되어 있는 事業體를 말합니다. 그리고 家族만이 作業을 하고 있는 個人事業에 있어서는 事業費와 家計費의 區分만 되어 있으면 하나의 事業體로 보아 주십시오.

### (3) 雇傭 및 給與額 (II)

#### i) 年末現在 從業員數 (7)

從業員이라 함은 그 事業體內部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外部에서 일을 하거나를 不問하고 그 事業體의 運營에 直接 從事하는 者를 말합니다. 다시 말 하면 從業員에는

그 事業體의 直接的인 生産活動에 從事하거나 或은 間接的 또는 補助的인 生産活動에 從事하거나를 莫論하고 모두 從業員이라 할 수 있으며 生産活動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販賣 및 配達員等까지도 從業員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經營業務에 直接 從事하고 있는 事業主 및 無給家族從業員은 이를 從業員數에 包含시키는 것이 當然하나 經營業務에 直接 從事하지 않는 共同經營者 또는 株主까지도 包含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有給重役이나 支配人은 被僱傭者로 看做되는 것입니다. 原則적으로 從業員數의 計算은 1963年12月31日現在로 하여야 할 것이나 同年末現在의 計算이 困難할 경우에는 1963年中 年末에 가장 가까운 그 事業體의 給與計算基準日現在의 從業員數를 記入하여도 無妨합니다.

## ii) 被 僱 傭 者 (7-1)

一定한 算出基準에 依하여 賃金, 俸給 또는 이에 準하는 形式의 給與를 받고 있는 모든 從業員을 말합니다. 卽 生産從業員(常傭, 臨時, 日傭 및 有給家族從業員不問)과 事務 및 其他從業員의 合計人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事業體內의 現場에서 일을 하지 않고



自己住宅에서 일을 하는 從業員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外衣 및 外套製造事業體의 단추달기 作業 또는 紙袋 및 封套製造工場의 풀바르기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自宅生産從業員數도 被雇傭者數에 포함시키는 것은 當然하나 委託製造를 시킨 경우에 있어서 受託製造를 맡은 事業體의 從業員數를 포함시켜서는 絶對로 안됩니다.

그리고 俸給이나 賃金 또는 外務手當을 받고 있는 外務員도 被雇傭者에 포함하나 不定期的으로 偶然的 機會에 成立한 써어비스에 對하여 콤깃손을 받는 부로오카 등은 被雇傭者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無期限缺勤者, 軍務에 服役中인 者는 여기서 除外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病暇者, 事故로 因한 短期休暇者 및 罷業中인 者는 被雇傭者에 포함합니다.

### iii) 生産從業員(7-(1)-①)

製品 및 鑛產物의 生産에 直接 關聯있는 一線現場作業에 主로 從事하는 現場從業員 또는 이와 같은 生産의 補助 作業에 從事하는 從業員과 自宅生産從業員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現場에서 從事하더라도 實地로 肉體的 作業을 하

지 않고 後線에서 從事하는 事務員, 支配人, 重役等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事務 및 其他從業員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製造業인 경우에 있어서는 造製, 加工, 檢査, 檢量, 入荷, 貯藏, 操作, 包裝, 入庫, 出荷, 補修, 守衛, 補助的인 生産品의 生産業務, 生産工程의 記錄事務, 其他 上記業務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生産從業員이며 鑛業인 경우에 있어서는 採鑛, 掘進, 坑內支柱, 捲揚, 換氣, 排水, 穿孔, 發破, 粉碎, 選鑛, 檢査, 貯藏, 出荷, 保全, 修理, 守衛, 自家用品の 生産部門, 生産過程의 記錄事務, 其他 上記業務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業務에 從事하는 從業員을 말합니다.

iv) 事務 및 其他從業員(7-(1)-㉓)

生産從業員 以外の 從業員을 말합니다. 卽 經理, 打字, 人事, 福利, 厚生, 企劃, 販賣, 配達, 試驗 및 研究部門에 從事하고 實地로 作業을 하지 않는 從業員을 말하며 여기에는 報酬를 받는 支配人, 重役等도 포함됩니다.

v) 事業主 및 無給家族從業員(7-(2))

事業體의 主人(出資者包含)과 主人의 家族(同居者包含)이 事業體運營을 위하여 事務나 또는 勞務에 1週 16時間

以上 從事하되 一定한 算定基準에 依하여 賃金이나 俸給 또는 이에 準하는 給與를 받지 않는 者를 말합니다.

그러나 名義上만 事業主이고 1週 16時間以上(正常勞動時間의 3分之1 以上) 就業치 않는 者는 여기에서 除外하여야 합니다.

以上の 條件을 가지고 있는 2人以上の 同業主가 있을 경우에는 그中에서 1名만을 事業主로 보고 나머지는 無給家族從業員으로 보아야 합니다.

#### vi) 從業員數의 合計(7-(3))

被雇傭者數와 事業主 및 無給家族從業員數를 合한 總人員數를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被雇傭者數는 生産從業員數와 事務 및 其他從業員數를 合한 것입니다.

#### vii) 事業體 規模符號

事業體規模라 함은 그 事業體從業員數合計(事業主 및 無給家族從業員+被雇傭者數)에 依한 階層의 位置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普通 從業員數에 依한 規模를 事業體規模 또는 企業體規模로 使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各事業體規模를 다음 表에서 指定한 該當規模符號를 찾아서 그符號를 調査票 別欄의 規模別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符號의 記入은 調査員이 直接 하여 주십시오.)

事業體規模符號

從業員數階層	規 模 符 號	
	鑛 業	製 造 業
5~ 9人	1 1	1 1
10~ 19人	1 2	1 2
20~ 29人	1 3	1 3
30~ 49人	1 4	2 4
50~ 99人	2 5	2 5
100~199人	3 6	3 6
200~499人	4 7	4 7
500人以上	4 8	4 8

viii) 月別 被雇傭者數 (8)

1963年間の 生産從業員과 事務 및 其他從業員의 每月末 被雇傭者數(年末現在從業員數의 說明參照)를 記入하여 주십시오.

1963年間に 休業한 月에는 被雇傭者數 앞에 「△」 表示를 하여 주십시오.

年間操業月數欄에는 「△」 表示가 없는 月數를, 操業月合計

人員數欄에는 △表示가 없는 月の 人員數를 合算한 것을, 操業月平均人員數欄에는 操業月合計人員數를 年間操業月數로 나눈 人員數(4捨5入)를 各各 記入하여 주십시오.

ix) 年間賃金 및 俸給支給額 (9)

1963年中 事業體에서 一定한 算定基準에 依하여 被雇傭者에게 支給한 모든 給與額을 말합니다.

給與라 함은 現金 또는 現物(物品)을 不問하고 定期 또는 不定期를 不問하고 勞務의 代價로 被雇傭者에게 支給되는 俸給, 賃金, 賞與金, 各種手當, 生計補助金等を 말하며 여기서 退職慰勞金을 除外합니다.

그러나 無期限缺勤者, 軍務에 服務하는 者에 對한 諸給與額과 1963年 以前에 있어서 滯拂되었던 것을 1963年中에 支給한 給與額은 여기에 包含시켜서는 안됩니다. 反面에 自宅生産從業員에 對한 給與額은 여기에 包含하여야 하며 1963年中에 支給하여야 할 것으로서 滯拂된 給與額은 支給額으로 보아(加算) 주십시오.

x) 現金給與額 (9)

現金給與額이라 함은 税金, 貯金, 勞動組合費, 賣店의 物品代 等を 控除하고 支給하였을 경우에 이와 같이 被雇

傭者が負擔하여야 할 金額을 控除하기 以前の 金額 卽 事業體에서 負擔한 全額을 말합니다.

萬一에 被雇傭者が 負擔하여야 할 給與所得稅를 給與額에서 控除하지 않고 이를 事業體에서 直接負擔하였을 경우에 이와 같은 事業體負擔은 現金給與額에 이를 加算하여 주십시오.

#### xi) 現物給與額 (9)

現物給與라 함은 給與로써 現金이 아닌 現物(物品)을 被雇傭者에게 支給한 것을 말합니다.

支給한 現物이 自家生産品인 경우에는 支給한 日字 現在の 工場引渡販賣價格으로 評價하고 購入品인 경우에는 實地 購入한 價格으로 評價換算하고 金額으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一部有償인 때에는 前項에 依하여 換算된 金額에서 被雇傭者が 負擔한 金額을 控除한 殘額 卽 事業體에서 事實上 負擔한 金額만을 여기에 加算하여 주십시오.

#### xii) 給與額의 合計(9-(3))

生産從業員의 것과 事務 및 其他從業員의 것을 合算하여 橫列合計欄에, 現金給與額과 現物給與額을 合算하여 縱列合計欄에 各各 記入하며 總合計는 橫列合計에 依한 것과 縱列

合計에 依한것이 各各 符合하여야 합니다.

#### (4) 年間生産費(人件費 및 間接生産費除外)(Ⅲ)

1963年間の 生産을 爲하여 使用(消費)한 諸費用中에서 人件費와 間接生産費를 除外한 原材料費, 燃料費, 購入電力費, 購入用水費, 委託生産費와 修理 및 維持費를 調査하여 各各 該當欄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한가지 注意하여야 할 것은 原材料費나 燃料費 등의 計算에 있어서 1963年間に 購入한 것과 使用한 것을 混同하기 쉬운데 購入과 使用은 嚴然히 區分하여야 할 性質의 것이며 여기서 要求하고 있는 것은 1963年間に 使用한 原材料의 價格, 使用한 燃料의 價格입니다. 例컨데 그 年間に 1年6個月에 걸쳐 使用할 原材料를 購入하였다고 假定하면 1年分을 使用하고 6個月分은 在庫로 남았을 것이므로 이런때에 原材料費로 1年分에 對한 價格만을 計上하여야 하며 1年6個月分을 計上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i) 原 材 料 費(10)

여기서 原材料라 함은 自家生産하였거나 購入한 原材料를 使用하여 鑛産物, 製品 및 「써어비스」를 自己採算下에 生産하는에 있어서 1963年間に 使用(消費)한 素材를 말하며

化學藥品, 包裝材料等과 같은 補助材料도 原材料에 包含합니다.

그리고 他事業體에게 自己原材料를 供給하고 委託製造를 시킨 경우에는 受託製造事業體에서 1963年間の 生産에 使用(消費)한 原材料費도 여기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sup>V</sup>다른 事業體로부터 原材料의 供給을 받아 受託生産을 한 경우에 受託生産에 使用한 原材料를 그 事業體의 生産費로 計上해서는 안됩니다.

無煙炭과 같이 普通 燃料로 使用되는 것이 라도 煉炭 工場의 경우는 原材料로 使用한다는 것을 留意하여 주십시오.

○ 同一事業體內에서 原材料를 使用하여 中間製品을 製造하고 그 中間製品을 다시 使用하여 最終完製品을 生産한 경우에는 最初の 原材料에 對하 使用額만을 計上하여 주십시오.

調査票 原材料費欄에는 그 事業體에서 1963年中에 使用한 原材料의 主要品目を 別冊 原材料分類에 記載된 그 事業體의 産業細分類에 該當되는 原材料品目中에서 使用金額이 큰 것 부터 [8種]까지를 選定한 다음 그 選定된 品目에 依한 品名, 單位, 數量, 金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單位, 數量도 原材料分類에서 指定한 單位와 그 單位에 依한 數量을 記入하되 事業體에서 使用하고 있는 單位와 相違할 때에는 指定된 單位로 換算하여 주십시오.



~~原材料의 價格은 帳簿價格(購入價格)에 依하여 評價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品目別로 記入하지 못한 原材料에 對하여는 이를 一括하여 其他欄에 金額만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農業, 林業, 水産業 및 鑛業等 原始産業活動을 兼營하고 있는 事業體에 있어서 使用한 ~~自家生産原材料의 評價는 使用當時의 時價(運賃包含)로 하여 주십시오.~~

#### ii) 燃 料 費 (11)

1963年間に 鑛產物 또는 製品 生産過程에서 使用한 燃料을 帳簿價格(購入價格)으로 評價하고 미리 調査票에서 指定한 單位에 依하여 數量과 金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熔接用 酸素와 自家發電에 消費한 燃料等도 燃料費에 包含하여야 합니다.

#### iii) 購入電力費 (12)

1963年間に 使用한 購入電力의 料金과 使用량을 記入하여야 하나 同年間に 支出한 것에 對한 料金과 使用량을 記入하여도 無妨합니다. 그리고 事務室用電燈料金과 1963年間に 支出하여야 할 電力料金으로서 滯拂된것도 여기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自家發電에 所要된 費用은 여기서 이를 除外하고 燃料費에 加算하여 주십시오.

iv) **購入用水費**(13)

1963年間に 使用한 購入用水의 料金과 使用量을 記入하여야 하나 同年間に 支出한 것에 對한 料金과 使用量을 記入하여도 無妨합니다. 그리고 事務室用이나 從業員의 飲料用水費와 1963年間に 支出하여야 할 水道料金으로서 滯拂된 것도 여기에 包含시켜 주십시오.

v) **委託生産費** (14)

自家生産原材料나 購入原材料를 他事業體에 供給하여 委託生産을 시킨 경우에 있어서 受託生産事業體의 1963年間 既成高部分에 對하여 支出하여야 할 加工賃을 말하며 여기에는 實地支出된 加工賃(未拂包含)과 運賃을 包含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委託製造를 爲하여 供給한 原材料의 使用額은 여기에 包含시키지 않고 原材料費에 包含시켜 주십시오.

vi) **修理 및 維持費** (15)

生産活動을 爲하여 保有하고 있는 有形固定資産의 正常的인 性能을 維持하기 爲하여 支出된 諸費用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修理 및 維持에 使用한 原材料, 機械의 潤滑油類, 消耗品, 附屬品 등의 購入價格이 包含되어야 합니다.

이 項目을 調査할때 特히 留意하여야 할 點은 修理 및 維持費中 會計上 損失로 處理되어야 할 性質의 것을 여기에 計上하는 것이며 建物 및 構築物의 増改築이나 機械 器具等の 改造로 그 資産의 性能이 높아지고 價値가 増殖됨으로서 會計上 有形固定資産의 價値增加로 處理되어야 할 性質의 것은 여기에 包含시키지 말고 有形固定資産의 取得으로 보아 주십시오.

#### (5) 製品出荷額 및 收入額(VI)

1963年間の 製品出荷額, 廢品等出荷額, 受託製造收入額 및 受託修理工料收入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 i) 製品出荷額 (17)

製品出荷라 함은 自家生産原材料 또는 購入原材料를 使用하여 그 事業體에서 直接하였거나 委託시켜서 하였거나 그 事業體의 採算下에 生産한 모든 製品의 販賣를 말합니다.

販賣라 함은 그 事業體에서 直接販賣하였거나 委託시켜 販賣하였거나를 不問하고 또 現金, 手票를 받고 販賣하였거나 外上(어음)으로 販賣하였거나를 不問하고 이를 모두 販賣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見本 또는 膳物用으로 無償出荷된 것과 自體의 事務用이나 從業員給與用으로 自家消費된 製品은 이를 販

賣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反面에 購入한 物品에 加工을 하지 않고 原狀대로 販賣한 것이나 또는 他事業體의 原料를 使用하여 受託生産한 製品의 出荷는 여기서 이를 販賣나 出荷로 보지 않습니다.

● 出荷製品의 評價에 있어서는 原則적으로 工場(鑛山은 最寄驛) 引渡販賣價格으로 하며 그 製品이 物品稅 또는 酒稅의 賦課對象品目일 때에는 同稅金은 包含한 販賣價格으로 하며 無償으로 出荷된 것이나 自家消費한 製品의 評價亦是 위에서의 方法과 同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外國에 輸出된 製品으로서 外貨로 販賣契約이 된것은 그 外貨를 契約當時의 外換時勢(公定換率+프리미엄)에 依하여 元貨로 換算하여 주십시오.

調査票의 製品出荷額欄에는 그 事業體에서 1963年間に 販賣한 製品名을 別冊 生産品分類에 記載된 그 事業體 産業細分類에 該當되는 品目中에서 販賣金額이 큰것 부터 8種까지를 選定하여 品目, 單位, 數量, 金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單位와 數量도 生産品分類에서 指定한 單位와 指定한 單位에 依한 數量을 記入하되 그 事業體에서 使用하고 있는 單位가 指定된 單位와 相違할 때에는 指定한 單位로 換算한 單位와 數量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品目別로 記入치 못 하는 品目에 對

하여는 이를 一括하여 其他欄에 金額만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ii) 廢品等出荷額 (18)

製品의 生産過程에서 생기는 廢品 卽 例를 들면 紡織工場의 屑糸, 工場이나 印刷所에서 나오는 紙屑, 破紙와 같은 것 또는 不合格品(不良品)等を 1963年中에 販賣하여 收入된 金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廢品은 製品의 生産過程以外에서 나오는 廢物 卽 破損된 機械附屬品, 使用不能인 冊床, 椅子, 事務用品等과는 嚴然히 區分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이러한 廢品을 除外하여 주십시오.

iii) 受託製造收入額 및 受託修理工料收入額 (19, 20)

• 他事業體로부터 原材料의 供給을 받아 受託製造한 것에 對한 加工賃收入 또는 他人所有物品을 修理加工한 것에 對한 修理工料收入을 말하며 1963年中의 既成高部分에 對하여 받아야 할 收入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시되 未收金도 合算하여 주십시오. 修理나 製造의 受託을 받았을 때에 一部 原材料를 그 事業體(受託)에서 購入 充當하였을 경우에는 同 原材料費를 生産費에 計上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事業體에서 中古品을 購入하여 修理해서 販

賣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受託修理로 보지 않고 中古品購入價格은 生産費에, 販賣品價格은 製品出荷에 各各 計上하여야 합니다.

#### (6) 內國消費稅額 (V-22)

出荷된 製品中 物品稅 또는 酒稅의 賦課對象品目이 있을 境遇에는 그 事業體에서 1963年間に 徵收하여 納付(稅務署)한 內國消費稅額(物品稅 및 酒稅)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963年間に 賦課되었으나 年末까지 納付하지 못한 內國消費稅額도 여기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外國輸入品에 對한 消費稅는 外國生産品이 賦課對象이 되므로 國內生産品이 賦課對象인 內國消費稅와는 區分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輸入品에 對한 消費稅를 包含시키지 마십시오.

#### (7) 在 庫 額 (VI)

##### i) 年初年末 製品在庫額 (23)

年初年末이라 함은 1963年の 年初(1月1日營業開始前) 年末(12月31日 마감時)을 말합니다. 따라서 年初在庫額は 事實上 前年末日現在의 在庫額과 符合될 것입니다. 年初年末在庫額は 完製品 및 半製品과 在工品을 區分 調査하여 주십시오.

在庫品の 評價는 그 事業體의 帳簿價格(原價)으로 하여 주십시오.

他事業體로부터 受託받아 生産한 製品의 在庫는 여기에 包含하지 않으며 이 在庫는 委託事業體에서 計上하여야 할 性質의 것입니다.

그리고 販賣代金까지 받았으나 아직 出庫가 안된 製品이 있을 경우는 이를 在庫에서 除外하고 出庫한 製品으로 보아야 합니다.

ii) 年初年末 原材料 및 燃料在庫額(24)

製品在庫額과 같은 方法으로 年初年末의 原材料 및 燃料에 對한 在庫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8) 有形固定資産(Ⅶ)

여기에서 有形固定資産이라 함은 1年以上의 經濟的 價値를 維持하는 土地, 建物, 構築物, 機械, 器具, 裝置, 車輛, 運搬機具 및 船舶等を 말하며 無形固定資産인 營業權, 特許權, 地上權, 鑛業權은 調査對象이 안됩니다.

i) 年間有形固定資産의 取得額 및 増改築額(26)

1963年間に 土地, 建物, 構築物, 機械, 器具, 裝置, 車輛, 運搬機具 및 船舶等 有形固定資産을 取得 또는 増改築을

위하여 支出된 모든 費用을 調査 記入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有形固定資産의 機能을 維持保全하기 위하여 部分品을 代替시켰거나 修理에 支出된 諸費用은 여기서 除外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評價方法에 있어서 他事業體로 부터 購入한 것은 取得을 爲하여 支出된 費用과 設置費를 包含하고 自家에서 生産하여 取得한 固定資産에 對하여서는 그것이 完成되었건 完成되지 않았건을 不問하고 그 固定資産의 既成高를 올리는데 1963年間に 支出한 모든 費用 卽 賃金, 俸給, 資材代 및 其他支出費用을 全部算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資産再評價에 依하여 帳簿價格이 名目上으로만 增加된 것은 이를 除外하여 주십시오.

#### ii) 土 地 (26-1)

工場 및 事務所의 敷地, 社宅敷地, 建築豫定敷地, 運動場 등의 取得을 爲한 諸費用과 建築 및 築造物의 工事を 爲한 土地改良에 支出된 整地費等を 包含하여 주십시오.

#### iii) 建物 및 構築物 (26-2) 26-(3))

建物이라 함은 工場, 事務所, 社宅, 寄宿舍, 其他附屬建物을 말하며 여기에는 昇降機, 冷暖房裝置, 通風裝置等인 內部裝置를 包含하며 構築物이라 함은 道路, 鐵道, 橋梁, 담



장, 煙突, 水槽탱크, 棧橋, 造船臺, 送油管, 上水道, 井, 造園 등을 말하며 이와같은 固定資産의 取得을 爲한 1963年間の 諸支出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iv) 機械 및 器具 (26—(4))

이 項目에서는 耐久性있는 産業用機械(力織機, 原動機, 旋盤等)와 容器 및 工具(玻璃당크, 함마等) 그리고 反射爐, 加熱爐, 熔鑛爐 및 傳導裝置等の 取得을 爲한 1963年間の 諸支出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遊休中이거나 豫備品으로 保管中인 것이라도 1963年間に 取得한 것이라면 이를 包含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事務用備品 및 器具는 이를 여기서 除外하고 事務用機械 例컨데 計算機, 會計機, 穿孔機, 檢孔機, 分類機等은 여기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v) 車輛, 船舶 및 運搬機器 (26—(5))

車輛, 自動車 및 牛馬車等인 陸上用運搬機器와 傳馬船, 運搬船, 貨物船等인 海上用運搬機器의 取得을 爲한 1963年間の 諸支出額을 말합니다.

vi) 年間有形固定資産의 處分額 및 損害額 (26)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有形固定資産을 1963年間に

賣却, 讓渡, 寄附 또는 火災, 風水害, 盜難等으로 因하여 有形固定資産의 實質的인 價値減少가 있을 때에는 同資産을 實地 賣買한 價格으로 評價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實地 賣買價格이 없을 경우에는 減少原因의 發生當時에 賣買할 수 있는 價格으로 評價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減價償却에 依하여 帳簿價格이 減少된 金額은 이를 包含시켜서는 안됩니다.

#### (9) 動力施設(Ⅷ)

##### i) 年末現在 動力施設의 能力 (29)

1963年12月31日現在 事業體에 設置된 모든 電動機, 原動機 및 自家發電施設에 原製作者가 붙인 넛넛(規格表)에 記載된 總馬力數와 發電能力을 말하며 動力生産을 目的으로 使用되는 移動性 原動機도 이에 包含됩니다. 이 項目에 있어서는 電動機와 原動機(船舶, 車輛用 및 自家發電用除外)의 馬力數와 自家發電能力을 區分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豫備로 保有中이거나 遊休中인 電動機와 原動機 및 自家發電施設도 이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 ii) 電 動 機 (29-(1))

一般的으로 電動機에는 自家發電한 電力으로 움직이는 것과 購入電力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區分할 수 있으나 여

기서는 이와 같은 區別이 없는 電動機의 總馬力數를 調査합니다. (個個 機械에 直接 附着된 電動機는 除外)

iii) 原動機(船舶用,車輛用 및 自家發電用除外)(29-(2))

原動機의 用語는 때로는 電動機까지 包含한 것으로 使用되기는 하나 여기서는 電動機를 原動機의 範疇에서 除外합니다.

原動機에는 機械를 直接 움직이게 하는 것과 自家發電에 利用 되는 것과 利用目的에 따라 原動機를 區分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963年末現在의 利用狀態에 따라서 機械用과 發電用으로 區分을 하고 여기서는 機械運轉用原動機만의 馬力數를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iv) 自家發電能力 (29-(4))

1963年末現在의 利用狀態에 따라 自家發電用 原動機및 施設의 發電能力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10) 管轄事業體 (K-30)

管轄事業體라 함은 經營主體인 한 企業體에 所屬된 모든 事業體를 말합니다.

그 事業體가 本社 또는 本店인 경우에 限하여 그 企業體에 屬하며 이센서스의 調査對象이 된다고 認定되는 事

業體를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事業體名, 代表者名, 所在地  
主要生産品名은 事業體의 特徵에서 說明한 바 있는 要領에  
依하여 記入하시고 從業員數와 操業, 休業은 1963年12月末  
日現在로 하여 주시고 操業, 休業欄은 該當欄에 「○」標를  
表示하여 주십시오.

(11) 其 他

- i) 應答者欄에는 事業體側應答者의 記名만을, 調査員및  
指導員欄에는 記名과 捺印을 하여 주십시오.
- ii) 調査票作成根據의 區分에 있어서는 各 該當事項( )  
內에 「○」表示를 하여 주십시오.

(12) 補 遺

i) (5)의 i)製品出荷額

한 事業體의 出荷製品名選定에 있어서 別冊生産品分類에  
記載된 該當産業細分類의 製品名으로서는 그 事業體의 主  
要製品의 大部分을 「카바」할 수 없거나 또한 製品名  
이 8가지에 未達되는 境遇에는 同産業細分類가 屬하는  
中分類內에서 主要製品名을 더 찾아서 調査票에 記入하  
여 주십시오.

이와같은 方法에 依하더라도 그 事業體의 主要製品의  
大部分을 「카바」할 수 없거나 製品名이 8가지에 未達되

는 경우에는 慣習名稱에 依하여 그 나머지 製品名을 該 當欄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ii) (4)의 i) 原材料費

한 事業體의 原材料品名 選定에 있어서 別冊 原材料分類에 記載된 該當 産業細分類의 原材料品名으로서는 그 事業體의 主要原材料의 大部分을 「카바」할 수 없거나 原材料品名이 8가지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同 産業細分類가 屬하는 中分類內에서 主要原材料品名을 더 찾아서 調査票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이와같은 方法에 依하더라도 그 事業體의 主要原材料의 大部分을 「카바」할 수 없거나 原材料品名이 8가지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慣習名稱에 依하여 그 나머지 原材料品名을 該當欄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iii) 本社實査上の 處理

한 企業體의 本社가 管轄事業體와 分離해서 別個事業體로 分類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本社에서 管轄事業體의 計數를 合친 한장의 調査票를 作成하되 그 調査票의 管轄事業體欄에는 空欄으로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本社가 管轄事業體와 分離해서 하나의 事業體로 分類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本社에서 本社를 包含한 各事業體別로 調査票를 各各 作成하되 本社

調査票の 管轄事業體欄에는 各事業體의 内譯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이런 경우 萬一 本社에서 管轄事業體의 計數調  
査가 不可能할 때에는 可能한데 까지 記入하여 주십시  
오.

註：本社에서 이와같이 調査함으로써 重複調査할 憂慮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센서스本部에서 別途審査가 있을것임.